

2026년 전북천년명가 신규 모집 공고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100년 이상 존속·성장을 위하여 「2026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2. 2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1 모집 및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2. 27.(금) ~ 3. 31(화) 17:00까지 ※ 신청기간 접수

나. 신청대상 : 도내 30년(공고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동일업)을 승계한 업체

- (업 력) 공고일 기준 30년 이상 동일업종 사업 영위
- (업 종)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기준으로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붙임] 지원제외 업종 참고

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접수 ※ 확인전화 필수

- 홈페이지 : www.jbsos.or.kr 지원사업신청
- 방문접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마감일 2026. 3. 31.(화) 17시 이전 도착 건에 한하며, 이후 접수 불가

라. 문의처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063-717-1304

2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12.

나. 지원규모 : 6개사

다. 지원내용 : 경영·홍보·마케팅·멘토링·금융 등 종합 지원

구 분	내 용
경 영 지 원	• 업체별 최대 18백만원 지원 (인건비, 재료비, 현금성 물품 사용불가)
홍 보 지 원	• 방송사 연계 업체별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마케팅 지원	• 인증서, 인증현판 제공 • 전북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통한 천년명가 업체 소개
멘토링 지원	• 업종별 전담멘토 매칭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금 융 지 원	• 전북천년명가 특례자금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운영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기선정업체

3 선정 및 평가

가. 선정절차



※ 해당 일자리는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1차 서류평가

- 평가항목 : 업력,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평균 상시근로자 수, 최근 3년간 연매출 증가율 등 종합 정량 평가
- 선정규모 : 12개사(최종 선정의 2배수 선발)

다. 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업체경쟁력, 성장가능성, 경쟁 우위 요소, 예산적정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 진행
- 선정규모 : 6개사

라. 선정방법

-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6업체 선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산술 평균점수로 산출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동점자 발생 시 업력>매출액>상시근로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최종 합격자 중 포기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신청서류

연 번	제출서류	비 고
1	신청서 1부	서식 1
2	신청업체 기술서 1부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서식 3
4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약속서 1부	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1부	서식 5
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벤처24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신청일 당시 소상공인 유효본)	서식 6
7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공고일 이후 발급 분)	서식7, 8

8	<p>도내 30년 이상 사업 영위 업력 관련 증빙서류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자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사실증명원 ▶ 가업승계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관련 등 가업승계 입증 가능한 서류 ▶ 과거 사업체 운영 관련 수상 경력, 언론보도, 사진 등 30년 이상 사업 영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도 증빙으로 인정 	첨부서류1
9	<p>최근 3년(2023년~2025년) 매출액 확인서류(택1)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첨부서류2
10	<p>2025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첨부서류3

5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나.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신청 업체에 귀속됨
- 라. 선정업체에 지원되는 경영지원금 18백만원 중 3백만원은 방송 제작 및 홍보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함

붙임1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홍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